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인 구 교 육 과 (의 원 발 의)	1
2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인 구 교 육 과 (의 원 발 의)	6
3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인 구 교 육 과 (의 원 발 의)	9
4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제 기 업 과 (의 원 발 의)	13
5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 광 진 흥 과 (의 원 발 의)	18
6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광 진 흥 과	24
7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담 당 관	29
8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 획 예 산 담 당 관	33
9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40
10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44
11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51
12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살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56
13	거창군 국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정 책 과	65
14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 건 정 책 과	73
15	거창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전 략 담 당 관	79
1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84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3. 27.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표주숙,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인구 유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안 제5조, 제6조)

마. 거창한군민제도 운영(안 제7조)

바.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15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인구교육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5. ~ 3. 1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절실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15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거창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조(목적)	생활 인구 확대로 지역 활력 제고	
제2조(정의)	생활인구, 거창한 군민, 거창한군민 가맹점에 대해 정의함	

제3조~제4조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제6조 (사업 추진)	국내외 지역 교류,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거창한군민제도 운영)	거창한군민제도의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8조~제9조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되었음.
- 생활인구에는 주민등록상 주민외에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음(제15조제1항)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5조제2항)
- 한편,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인구정책 관련 조례에 ‘생활인구 확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강진군에서는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2023.7.27.)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의 청년·중장년 정착지원을 강화하였고,

- 구미시의 경우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2023.12.27.) 일부개정으로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외부인구유입 지원 센터’ 지정·설치 관련 규정까지 두어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덧붙여, 전북 남원시는 2023년 12월 6일에 전국 최초로 별도의 생활인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남원사랑시민제도’를 운영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남원사랑시민증을 발급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군에서도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창한군민제도’ 운영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2023년 11월 29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신설하여 생활인구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유입의 중요성을 더욱 높여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9>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3. 27.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11명)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2024년부터 경상남도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이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 지방자치법 제28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인구교육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3. 10. ~ 3.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폐지의 필요성 : 필요

- 업무 이관으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음.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이 조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 보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경상남도과 거창군이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왔으나,

○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2023. 10. 26.) 협의 결과 및 경상남도 교육인재담당관-3779호(2023. 12. 6.)의 통보에 따라 2024년부터 경상남도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이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에 따라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이하 생략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3. 27.

나. 발 의 자: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청소년의 중독이 자살 사고로 번지는 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발굴하고 각종 중독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중독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인구교육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3. 17 ~ 3.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각종 중독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마약·약물·도박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조(목적)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정의)	‘청소년’, ‘중독’ 용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제3조~제5조	군수의 책무와 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 -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 중독된 청소년의 조기발견 - 중독 예방	
---------	--	--

-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중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그런데도, 청소년들의 마약, 도박, 각종 디지털 매체 등에 대한 중독은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 가정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청소년 중독과 관련된 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
 -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청소년 중독 관련 상담이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 요청 시 아이월센터로 연계해 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증진 사무가 자치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현실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사료됨.



관련법령 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략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3. 27.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회복을 위한 공공요금 및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안 제4조)

나. 이자지원의 요건 등(안 제5조)

다. 지원 중지·환수(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의8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경제기업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3. 18. ~ 03.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의8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 회복을 위한 공공요금 및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4조 (소상공인지원)	•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u>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u>	
제4조 (소상공인지원)	• 3호~8호까지 신설 3. <u>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u> 4. <u>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u> 5. <u>경영환경개선 지원</u> 6. <u>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자문 및 교육 지원</u> 7. <u>제품의 홍보·마케팅</u> 8. <u>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제5조 (지원 및 제외 대상)	• 조항 제목 변경 (지원 및 제외 대상) → <u>(이자지원의 요건 등)</u>	
제9조 (지원중지·환수)	• 이자지원을 받은 자 → <u>재정 지원을 받은 자</u> • 용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 <u>지원을</u>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 용자금 → <u>지원금</u>	

- 현행 조례에서는 이자지원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지원범위를 넓히고자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음.
- 실제 지난 3월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을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연체율은 0.17%포인트 늘어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발표됨.

-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국 사업체 숫자 중 80-90%를,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의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에, ‘경기 바로미터’인 소상공인들의 폐업 공제금이 부산, 울산 등에서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을 만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관련법령 발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3. 27.

나. 발 의 자: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11명)

(신중양, 이재운,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관광기본법」 제6조, 「관광진흥법」 제48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관광진흥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18. ~ 3.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야간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관광기본법」 제6조, 「관광진흥법」 제48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조(목적)	야간관광 활성화	
제2조(정의)	‘야간관광’, ‘야간관광사업’ 용어 정의	

제3조~제6조	군수의 책무과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을 명시하고,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인프라 조성 및 정비 -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홍보 및 안내 - 연구·조사 - 축제, 행사 운영 - 자원, 명소 발굴	
제7조~제8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음.

○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는 물론 약 5,30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5,835명의 취업 유발효과, 약 9,093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분석됨.

- 덧붙여, 코로나 이후 변화된 여행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로컬, 레저, 친환경, 체류형, 취미여행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고, 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체류형의 대표적인 관광문화인 ‘야간관광’이 주목을 받았음.
- 이에, 일몰 후 야간 시간대에 관광명소 및 관광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야간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보존,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창포원과 수송대에 야간경관 조명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빼재산림레포츠파크와 가조향노화힐링랜드 등에서도 숙박시설을 갖춘 자원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해 보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 략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중 략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3. 2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야영장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승대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의 신설 및 삭제(안 제5조, 별표 3)
 - 1) 신설: 거창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 보훈보상대상자
 - 2) 삭제: 65세 이상 노인
- 나. 시설이용료 현실화(안 별표 1)
 - 1) 야영테크: 15,000원 ⇒ 30,000원
 - 2) 오토캠핑장: 30,000원 ⇒ 50,000원
 - 3) 썰매장 이용료 징수대상 확대: 7세 이상 ⇒ 36개월 이상
- 라. 법령 재기재 삭제, 용어순화·제도개선(안 제4조·제6조·제10조, 별표 2)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67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5.~3. 2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시설이용료 감면대상과 야영장 이용료 현실화
-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관광진흥법」 제67조
-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 검토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수승대의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야영장과 썰매장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개 정 안	비 고
시설이용료 면제대상 추가	4. 거창군에서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사람(<u>신설</u>)	주차장 이용료

(안 제5조제1항)		감면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추가 및 삭제 (안 제5조제3항 및 별표3)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 노인 →(삭제)	야영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 람(신설) →100분의 50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이용자(신설) 1) 소비금액이 5만원 이상 → 100분의 10 2) 소비금액이 10만원 이상 → 100분의 20 3) 소비금액이 20만원 이상 → 100분의 30	
	거창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100분의 10	야영장 썰매장
시설이용료 현실화 (안 별표1)	1) 야영데크 : 15,000원 → 30,000원 2) 오토캠핑장 : 30,000원 → 50,000원 3) 어린이 6,000원, 미취학아동 무료 → 어린이(36 개월이상~13세이하) 6,000원	야영장 썰매장

<타 지자체 운영 중인 야영·캠핑장·썰매장 시설이용료 현황>

(단위: 원)

지자체	이용기준	성 수 기		비 수 기	
		주 중	주 말	주 말	주 중
거창군	야영장	15,000	15,000	15,000	15,000
	오토캠핑장	30,000	30,000	30,000	30,000
합천군	야영장	40,000	40,000	40,000	40,000
	오토캠핑장	50,000	50,000	50,000	50,000
남해군	야영장	60,000	60,000	50,000	35,000
	오토캠핑장	60,000	60,000	50,000	35,000
의령군	야영장	45,000	45,000	40,000	40,000
	오토캠핑장	50,000	50,000	50,000	50,000
하동군	야영장	20,000	20,000	20,000	20,000
	오토캠핑장	30,000	30,000	30,000	30,000
함안군	야영장	55,000	40,000	55,000	40,000
	오토캠핑장	65,000	50,000	65,000	50,000

김해시	야영장	30,000	30,000	30,000	30,000
	오토캠핑장	40,000	40,000	40,000	40,000
밀양시	야영장	30,000	30,000	30,000	30,000
	오토캠핑장	40,000	40,000	40,000	40,000
통영시	오토캠핑장	35,000	30,000	30,000	25,000
사천시	야영장	30,000	30,000	30,000	25,000
함양군	야영장	35,000	35,000	35,000	25,000
창원시	야영장	30,000	30,000	30,000	30,000

- 야영장 사용료는 30,000원 ~ 60,000원, 오토캠핑장은 35,000원 ~ 60,000원임.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거창군의 시설이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야영데크 15,000원 ⇒ 30,000원(100% 인상)
 ⇒ 오토캠핑장 30,000원 ⇒ 50,000원(67% 인상)
-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경우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을 [별표3]에 신설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관련법령 발췌

□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 [본조신설 2023. 1.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21호, 2023. 1.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이하 생략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3. 2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거창군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거창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치 중인 군민행복위원회를 심의 안전이 생길 때마다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함(안 제2조)
- 나. 위원 임기를 삭제함(안 제4조)
- 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정비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12.~3.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하여 효율성 도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또한,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 위원회 총 3천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
- 그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를 총 1,362개 정비하였음.

<지자체 위원회 정비실적>

구 분	주 요 내 용
정비 유형별 위원회 수	• (폐지·통폐합)671개, (협업체 전환)28개 • (비상설화)651개, (존속기한 명시)12개
시도·시군구 정비 위원회 수	• (시·도)388개(평균 22.8개), (시·군·구)974개(평균4.3개)

-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는 2022년 구성되어 2022년 12월 28일 1회 개최한 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았으며, 연중 운영해야 할 이슈가 없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로 바꾸어 운영하는 것이 유연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중

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계장(담당 주사)으로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계장(또는 담당주사)은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직위가 아니므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권고함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3. 2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조직 개편, 법령 개정, 경쟁제한 개선 과제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해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 사항 정비(안 제1조, 제4조~제6조, 제8조·제9조·제11조)
 - 1) 농업인 지원 ⇒ 농업인 육성
 - 2) 문화관광과장 ⇒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 3) 행복농촌과장 ⇒ 미래농업과장
- 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3조·제7조·제10조)
- 다. 경쟁제한 개선과제 등 정비(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3. 5.~3.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조직개편 후 현 실태 반영과 상위 법령에 따른 정비로 법적 신뢰도 향상 및 법률 적합성 확보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 조례는 다음과 같음.

조 례 명	개 정 안	비 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농업인 지원→ <u>농업인 육성</u>	조직개편사항 반영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배→ <u>5배</u>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제4호→「 <u>도서관법 시행령</u> 」 제4조 제6호	상위법령 개정

거창군 우리말 사용 활성화 조례	문화관광과장→ <u>문화예술과장</u>	조직개편사항 반영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화관광과장→ <u>문화예술과장</u>	조직개편사항 반영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과→ <u>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u>	조직개편사항 반영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9조의7→ <u>제9조의9</u>	상위법령 개정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문화관광과장→ <u>문화예술과장</u>	조직개편사항 반영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행복농촌과장→ <u>미래농업과장</u>	조직개편사항 반영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u>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u>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u>「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u>	상위법령 개정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행복농촌과장, 민원소통과장, 문화관광과장→ <u>미래농업과장, 민원소통과장, 관광진흥과장</u>	조직개편사항 반영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 <u>건전한 경쟁을 유도</u>	경쟁제한 개선과제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2024. 12. 31. 시행)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효과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조직개편 △법령개정 △경쟁제한 개선과제 등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중 략 ~

6.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2호, 2024. 11. 5., 일부개정]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 중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9조의7에서 이동 <2023. 6. 7.>]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1. 23.] [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타법개정]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7.>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폐지 2021.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1.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가족
2. 거창군민과 외국인과의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3.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 9. 29., 제정]

제4조(지원대상)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족 및 다문화가족
2.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4호, 2025. 1. 3., 일부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3. 2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거창군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안식휴가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정비함(안 제23조, 별표 2)
 - 1)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 및 사용기간을 확대함
 -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 법령 재기재로 삭제
- 나. 안식휴가 대상 확대·신설함(안 제23조)
 -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3. 10.~3.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저연차 공무원의 안식휴가 마련, 상위 규정에 따른 정비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안식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3조 2항	• 5세 이하 자녀, • 24개월간 유급	•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이하, • 36개월간 유급	
제23조 6항	<신설>	- 저연차 공무원 안식휴가 신설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7.2.)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① 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간 유급	• <u>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u>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u>36개월간 유급</u>
② 가족돌봄 휴가 확대	• 자녀 돌봄시에만 2일 부여(다자녀(2자녀 이상)는 3일)	• 자녀 돌봄시에만 2일 부여(<u>다자녀 3일, 셋째 자녀부터는 유급 1일씩 추가</u>)
③ 연가일수 확대	• 1년~2년 미만: 12일 2년~3년 미만: 14일 3년~4년 미만: 15일	• 1년~2년 미만: 15일 2년~3년 미만: 15일 3년~4년 미만: 16일
④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저축연가 소멸시효 10년	• 소멸시효 폐지
⑤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 1일	• 3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7.2.)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 전국의 상당수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MZ세대 공무원 등의 퇴직을 막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재산정하고 있는 바,
-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일부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중 략 ~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5. 2. 11.>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3. 2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2023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입법 경제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 나. 목적, 운영원칙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3조~제21조)
- 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22조~제29조)
- 마. 지원 및 주민자치연합회 설치 근거 등을 정함(안 제30조~제32조)
- 바.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644백만원 확보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2. 4.~2.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7조·제9조)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과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연간 64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
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조례명 변경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u>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장 총칙	목적과 운영원칙을 정함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 위원의 선정,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회의, 감사, 주민총회, 주민자치계획의 수립 등 전반적인 자치회 운영에 대해 정함.	
제4장 주민자치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정함.	
제5장 지원 등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중복 조례 폐지 (부칙 제2조)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르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 같은법 제40조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됨
- 이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주민자치회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그 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浞)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 치 구 사 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 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 자치센터 설치·운영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3. 2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를 폐지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나. 외국인주민의 지위,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사업 등을 정함(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심의를 정함(안 제6조, 부칙 제2조)
 - 1) 기능 수행: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 2) 폐지: 거창군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
- 마. 지원단체의 지원,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50백만원 확보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2. 20.~3.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조례 운영의 미비점 개선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외국인 주민 및 단체 지원에 연간 50백만원 소요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할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유사기능 위원회 삭제 (안 제7조, 부칙 제2조)	거창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u>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활용</u>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신설 (안 제10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다문화 주간으로 운영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	---------------------------------------	-------------------------

- 2025년 1월 말 기준 거창군 거주 외국인 수는 985명(남 505, 여480)으로 전체 인구수 59,452명 대비 1.65%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거창군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이 정부의 대외 평가에서 5관왕을 수상하고, 공영방송 우수사례 다수 소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줄을 이으며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음.
- 또한, 지난해 1월 농촌일손담당 전담팀을 전략담당관 내에 신설해 추진한 결과 2년 만에 인건비를 안정화했음
- 이에,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이하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3. 2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이장의 건강보호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과 행정 간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1) 2025년 예산 35,400천원 추경 확보 예정
 - 2) 도비 6,600천원 확정 통보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2. 28.~3.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이장의 건강 보호와 사기진작으로 주민과 행정 간의 능률성 제고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이장 267명 중 140명에게 1명당 30만원 지원으로 연간 4,200만원이 소요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시행 2023.08.03.)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장·통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

2. 이장·통장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3. 이장·통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도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명시 현황

시·군	조례개정	시·군	조례개정	시·군	조례개정
창원시	×	진주시	2020.10.08.	통영시	2024.12.31.

사천시	2024.11.21.	김해시	2024.12.19.	밀양시	2023.7.17.
거제시	2011.9.20.	양산시	2023.09.07.	의령군	2022.12.21.
함안군	2022.10.07.	창녕군	2024.12.26.	고성군	2024.12.20.
남해군	2025.03.04.	하동군	2025.02.04.	산청군	2024.11.07.
함양군	2023.12.28.	거창군	×	합천군	2024.03.07.

-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창원시와 거창군 두 곳만 이장·통장의 건강검진비 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거제시, 진주시, 함안군, 의령군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2023.8.3.) 이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됨.
- 시·군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무수행의 파트너인 이·통장의 건강 유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5년 거창군 이장 관련 예산지원 현황

항 목	예 산 액	비 고
• 기본수당	월 40만원	
• 회의참석(월 2회) 수당	1회 2만원	
• 명절 상여금	연 200%	
• 복지 도우미 활동수당	월 10만원	
•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130,000천원	
•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3,000천원	
• 이장 자녀 장학금	6,100천원	
•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8,000천원	전년대비 5,000천원 증
• 이장 및 군민 표창패	5,980천원	
• 이장 단체복 지원	5,000천원	
•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30,000천원	
• 모범이장 연수 및 행사참석	20,000천원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더.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4. 7. 30.] [행정안전부훈령 제358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 1과 같다.

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① 경비성격: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준액

- 통·리장: 기본수당 월 4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4. “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진찰·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문자·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8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일부개정]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④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3. 2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함(안 제10조)
 - 1) 현행: 월 15만원
 - 2) 변경: 월 18만원
- 나.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10조, 장 삭제)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607.5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3. 18.~3.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참전유공자 예우 수준 향상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대상자 306명에게 매월 18만원씩 지급을 위해 연간 6억 6천
만원이 소요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은 15만원으로 유지함.

○ 이에 따라 연간 소요되는 금액은 660백만원으로 15만원을
지급할 때보다 연간 109백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함.

<명예수당 지급 변경내역>

(단위 : 원)

변 동 일 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비 고
2011.01.09.	50,000	30,000	조례제정시행
2013.01.09.	50,000	50,000	조례개정
2013.09.25.	80,000	50,000	조례개정
2014.04.02.	80,000	80,000	조례개정
2015.12.10.	100,000	100,000	조례개정
2021.09.29.	150,000	150,000	조례개정

○ 우리군 명예수당 지급 금액은 5만원 → 8만원 → 10만원 → 15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 왔음.

○ 국가보훈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및 통계(‘24.6월 기준)에 따르면 경남도내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의 최소금액은 10만원, 최대 금액은 18만원으로 이번에 우리군이 개정을 하게 된다면 도내에서 최고 금액에 해당하게 됨.

<광역단체별 참전수당 지급액 현황>

[2024.6월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광역지급액	수급자 수	기초단체 최대/최소 지급액	평균 지급액
서울	150,000	38,676	0~100,000	198,000
부산	100,000	17,126	0~200,000	136,875
대구	112,000	9,125	18,000~168,000	146,667
인천	100,000	11,836	50,000~120,000	180,000
광주	104,000	4,719	26,000	130,000
대전	100,000	5,018	50,000	150,000
울산	140,000	3,526	60,000	200,000
세종	150,000	889	-	

경기	33,330	47,775	50,000~220,000	167,685
강원	60,000	8,328	150,000~400,000	288,889
충북	60,000	6,199	130,000~220,000	228,182
충남	100,000	8,976	300,000~500,000	416,667
전북	40,000	8,454	60,000~110,000	127,143
전남	30,000	8,982	70,000~200,000	140,455
경북	100,000	12,362	100,000~200,000	231,818
경남	120,000	13,456	100,000~180,000	267,778
제주	250,000	2,694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

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4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 1. 17., 2006. 1. 13., 2008. 1. 22., 2010. 2. 4., 2010. 12. 31., 2013. 1. 14., 2014. 1. 14., 2015. 1. 12., 2016. 1. 7., 2016. 12. 30., 2017. 12. 29., 2020. 1. 7., 2021. 1. 5., 2022. 1. 13., 2022. 9. 20., 2023. 1. 13., 2024. 1. 12., 2025. 1. 14.> [적용 2006. 1. 1.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4호, 2025. 1.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4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제7조 중 "42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

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③ 삭제 <2015. 12. 22.>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3. 2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에 신설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근거를 정비함(안 제1조·제2조)
 - 1) 설치 근거에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을 명시함
- 나. 법령 재기재 사항 등을 정비함
 - 1) 위탁 대상 및 취소사유 삭제(안 제4조·제12조)
 - 2) 공유재산 사용, 준용, 시행규칙 삭제함(현행 제9조·제13조·제14조)
 - 3) 근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공유재산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2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지방자치법」 제161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3. 7.~3.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치매관리법」에 따른 내용 반영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지방자치법」 제161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는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 하고,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 <u>지방자치법</u> 」제161조 및 「 <u>의료법</u> 」제33조에 따라	제1조(목적)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거창 <u>군립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근거법령 삭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위치)거창군립노인 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 병원”이라 한다)은 거창 군 거창읍 운정3길 180 에 둔다.	제2조(설치 등)①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 <u>치매관리법</u> 」제16조의3에 <u>따른</u> 거창군립노인요양병 원(이하 “노인요양병원”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② 노인요양병원은 거창 군 거창읍 운정3길 180 에 둔다.	설치운영의 근거법령 명시
제4조(설치·운영)① 군수 는 노인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 갱신 할 수 있다.	<u>제4조(위탁 운영)</u> 군수는 노인요양병원 운영의 전 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 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설치는 제4조에서 규정 하였으므로 조항 제목을 위탁운영으로 바꿈
제12조(위탁의 취소)	삭제	법령 재기재로 삭제함
제13조(준용)	삭제	법령 재기재로 삭제함
제14조(시행규칙)	삭제	법령 재기재로 삭제함

- 지자체마다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조례로 규율하고 있음.
-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치매관리법」에 명시하였음.
- 치매관리법에 따른 내용을 현행화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치매관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49호, 2018. 6.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으로 본다.

제3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 6. 30.>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정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 략 ~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거창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3. 2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제안이유

-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수요 증가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화장시설 조성을 위한 『거창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 2) 위 치 :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2. ~ 2026. (5년)
- 4)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9,950㎡ / 건물면적 : 2,970㎡(지상2층)
 -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유택동산, 공원시설, 주차장 등
- 5) 사 업 비 : 23,300백만원(국 4,900, 도 1,000, 군 17,400)

나. 계획개요

- 1)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
- 2) 군관리계획 주요내용 : 장사시설 신설 A=29,950m²

다. 결정사유

- 1)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에서 최근 화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저출산과 고령인구 증가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화장 수요가 증가함
- 2) 화장장 부재로 100km 원거리 이동과 높은 이용료 부담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 친화적이며 편리한 화장시설 조성이 필요

라. 그간 추진 사항

- 1) 2025. 01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 2025. 02 : 공유재산 심의 원안가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3) 2025. 03 : 군관리계획 입안 요청(전략담당관 → 도시건축과)
- 4) 2025. 03 :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마. 향후 추진 계획

- 1) 2025. 04 : 군계획위원회 심의
- 2) 2025. 05 :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 고시
- 3) 2025. 06 :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행정절차 이행
- 4) 2025. 07 :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5) 2025. 08 : 공사 착공
- 6) 2026. 12 : 공사 준공

4. 참고사항

가. 거창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 책자참조

5. 검토의견

-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거창군 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장사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보건위생시설

1) 장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규 모(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장사 시설	화장시설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	-	29,950	증) 29,950	금회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너” 항목에 해당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또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에서 장사시설 중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안건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경남도 내 화장시설은 10곳이며, 그중 8곳이 거창군에서 100km이상 떨어져 있으며, 이동시간은 10곳 모두 1시간 10분 넘게 소요됨.

<경남도내 화장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거 리	소 요 시 간
1	창원시립마산화장장	136km	1시간 35분
2	진주시안락공원	88km	1시간 11분
3	통영시추모공원	135km	1시간 25분
4	사천시누리원	109km	1시간 19분
5	밀양시공설화장시설	113km	1시간 26분
6	고성군공설화장장	113km	1시간 22분
7	김해추모의공원	135km	1시간 53분
8	남해추모누리영화원	147km	1시간 44분
9	창원시립상복공원	130km	1시간 43분
10	함안하늘공원	96km	1시간 31분

- 또한, 보건복지부,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중 ‘전국 화장시설 지도’에 따르면 거창군과 경계하고 있는 함양, 합천, 산청, 무주, 장수군 역시 관외 화장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아 향후 관내뿐 아니라 관외에서도 화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국 화장시설 지도>



- 화장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화장장이 없는 우리
군민들은 원정 화장으로 시간과 비용을 적게는 2배, 많게는
3~4배로 지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화장문화 정착,
지역 간 이용료 편차, 화장장 접근성 등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화장시설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285회 임시회
시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음.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3. 2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3. 28.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① 신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원면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효과 증대 및 주민이용편의 제공 목적을 위해 사업부지 내 건축물을 증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신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2) 위 치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947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5년간
- 4) 사업내용 : 신원 사랑누리센터를 증축하여 평생교육센터 조성(2층)
연면적 $A=725.26\text{m}^2 \rightarrow 1,224.16\text{m}^2$ (498.9 m^2 증축)
- 5) 사 업 비 : 4,000백만원 (균 2,800, 도 360, 군 840)

나. 취득 및 처분 재산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천원)	사업내용	시기	비고
		소 재 지	면적(㎡)				
총 계				2,648,000		2025 ~ 2027	증축
취득	소 계		498.9	2,648,000			
	건축물	신원면 과정리 947번지	498.9	2,648,000	평생교육센터 조성		

※ 기준가격 적용 (증축 : 5,307,700원/㎡)

다. 추진경과

- 1) 2022. 6. : 2023년 농촌협약 선정
- 2) 2023. 7. ~ 2023. 12. :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사업 착수설명회 및 주민위원회 협의 3회, 선진지 견학 1회 추진
- 3) 2024. 12. : 기본계획 승인·고시
- 4) 2024. 1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거창군)

라. 향후계획

- 1) 2025. 3.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 2025. 3. ~ 2025. 9. : 실시설계 추진
- 3) 2025. 10. ~ 2027.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생활SOC 시설 증축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이용성 확보

바. 담당부서 검토

시 설 명	구분	담당부서 검토	비고
신원 평생교육센터 (신원면 과정리 947번지)	증축	▶ 신원 사랑누리센터를 증축하여 평생교육센터 조성 ⇒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주민편의공간 제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붙임3] 참조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붙임1] 참조

5. 사업비내역 : [붙임2] 참조

② 군 소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수 신청에 따른 재산 처분

1. 제안이유

- 가. 주상면 남산리 1320-1 소재 공유지에 대한 매수 신청에 따라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매각(처분)을 통해 군 재정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 나. 매수 신청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군민의 토지이용 불편사항 해소 및 군민 토지활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분개요

- 1) 위 치 :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1320-1
- 2) 재산구분 : 일반재산 / 토지
- 3) 재산가격 : 1,791천원

나. 세부내역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²)		
토지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1320-1	임야	2,957	1,791,942원	공시지가 606원/m ²

※ 검토 의견 : 군 소유 보존부적합

- 주상면 남산리 1320-1 토지는 매수신청인이 9년이상(대부기간 : '15. 10. 19. ~ 현재) 대부하여 사용중인 땅으로 매수신청인 주의 토지인 남산리 산8번지, 산8-2번지가 둘러싸고 있어 재산의 활용이 제한적이며, 부서별 관련 법령 검토 및 행정수요 파악 결과 향후 행정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음.

다. 추진경과

- 1) 2025. 02. 17. : 소규모 공유지 등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계획 수립
- 2) 2025. 02. 20. :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행정수요 파악
- 3) 2025. 03. 10. : 매수 신청서 접수

라. 향후계획

- 1) 2025. 04. : 군의회 의결
- 2) 2025. 06. :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수의계약*) 체결
*관련 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3호

마. 기대효과

-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매각을 통한 군 재정 건전성 강화 및 군민 토지활용 확대

3. 관련법규 및 조례 : [붙임3] 참조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제16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 : [붙임1,2] 참조

3. 검토의견

① 신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은

- 해당 사업은 2022년 6월, 2023년 농촌협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원면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12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음.
- ‘신원면 평생교육센터’ 설치 방안은 기존 사랑누리센터 건물을 증축(498.9㎡)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함.
- 사업비가 40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신원면 평생교육센터’는 공유부엌, 힐링카페, 재봉교육실, 힐링족욕실, 다목적 강당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여 면 소재지와 배후 마을에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사업운영 방식, 예산 집행 투명성, 거창공간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공 후 운영관리가 원활하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해야 함.

2. 군 소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수 신청에 따른 재산 처분 건은

○ 행정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임야인 주상면 남산리 1320-1번지 토지를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상면 남산리 1320-1번지는 면적이 2,957㎡이므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议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해당 토지는 매수 신청인이 9년 이상 대부하고, 기준가격이 1,791,942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3호에 따라 수익계약 대상에 해당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38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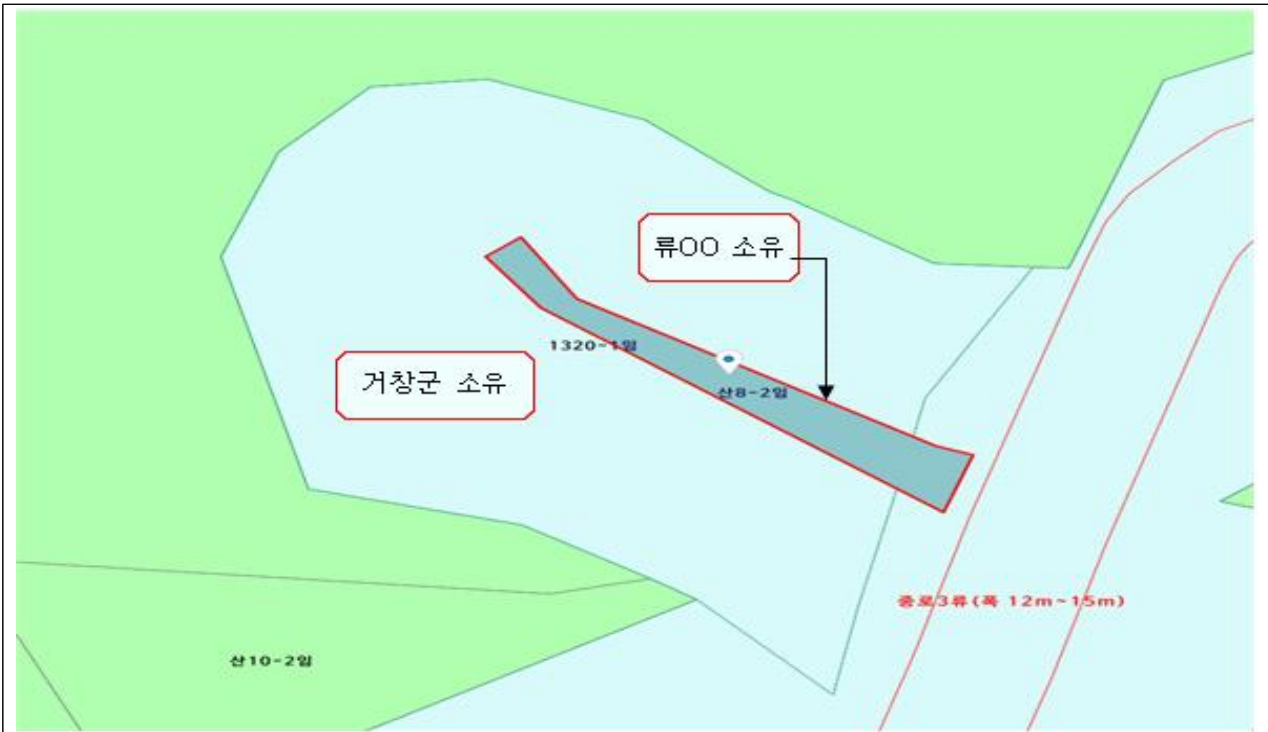
~이하생략~

○ 다만, 해당 토지는 주상면 도평리에서부터 가북면까지 이어지는 보해길에 인접해 있어 도로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토지이용 계획 확인 결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축사, 작물 재배사 등으로 활용도가 다양함.

- 토지의 기준가격 또한 1,791,942원에 불과해 군 재정 확충 효과는 미미해 보이며, 토지의 형태만 보더라도 공유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8-2번지(277m²) 임야를 매입하여 추후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재산 가치를 높일 것으로 판단됨.

<위치도 및 지적도>



주상면 남산리 1320-1번지, 주상면 남산리 산 8-2



토지이용 계획상 주상면 남산리 1320-1번지는 보전관리 지역에 해당함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